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복지법」의 장애 인정 질환 확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제4항)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4조의5)
- 다. 중증 정신장애 인정 질환에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하고, 일부 표기 방식 명확화 (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영 제27조에 따른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등 제출 명령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 실시 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서에 교육 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한다.

제4조의4(중전의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4를 제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을 “증상 등의”로, 같은 목 및 다목 중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 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을 각각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으로 한다.

가.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지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개정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보건복지부령 제791호, '21.4.13 시행)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 '21.4.13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장 수 개	
⑥ 소재지			
⑦ 사업체 전화번호		⑧ 사업체 팩스	
⑨ 담당자 연락처	성명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년 교육 실시 현황

⑩교육일자	⑪사업주 인원 수	⑫전체 근로자수	⑬적용제외 근로자 수	⑭교육대상 근로자
⑮교육방법	⑯교육주체	⑰사내강사 수료 번호	⑱사업주 교육 참여 인원 수	⑲근로자 교육 참여 인원 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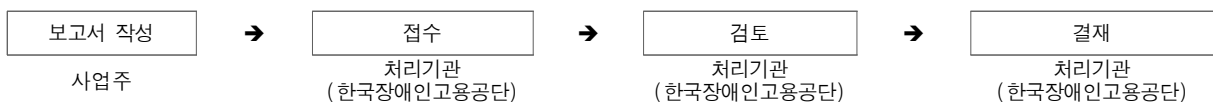
○○○○○○○장 귀하

첨부 서류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③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④란에는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점(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⑩란의 “교육일자”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적습니다. 교육을 여러차례 실시했거나 원격교육 등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이 최종 완료된 일자를 적습니다.
4. ⑪란의 “사업주 인원 수”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대표이사 포함) 수,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수를 적습니다.
5. ⑫란의 “전체 근로자 수”는 소속 근로자 월별 전체 인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6. ⑬란의 “적용제외 근로자 수”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월 평균을 적습니다.
7. ⑭란의 “교육대상 근로자 수”에는 (⑫ 전체근로자 수 - ⑬ 적용제외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8. ⑮란의 “교육방법”에는 1) 집체교육, 2)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간이교육 중에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4)간이교육’은 월평균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여러 가지 교육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⑯란의 “교육주체”에는 1) 자체교육(사업주 및 내부직원 직접 교육 시), 2) 전문강사 초빙, 3) 교육기관 위탁 중에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교육주체를 통하여 실시한 경우는 해당되는 교육 주체를 모두 적습니다.
10. ⑰란의 “사내강사 수료 번호”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활용하였던 사내강사가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료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활용한 사내강사가 여러명일 경우, 해당되는 사내강사들의 수료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1. ⑱란의 “사업주 교육 참여 인원 수”에는 ⑪란의 사업주 중 교육에 참석한 사업주 수를 적습니다.
12. ⑲란의 “근로자 교육 참여 인원 수”에는 ⑭란의 교육대상 근로자 수 중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13. 첨부서류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은 교육일자 및 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교육사진 등이 포함된 교육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영 제27조에 따른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등 제출 명령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 실시 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서에 교육 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u>제4조의2 (생략)</u>	<u>제4조의3(현행 제4조의2와 같음)</u>
<u>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u>	<u>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u>

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② (생략)

[별표1] 중증장애인의 기준

7. 정신장애인

가.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중증장애인의 기준

7. 정신장애인

가.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
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
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
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
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
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
움이 필요하며, 전반적 기능
수준(Global Assessment Fun
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
인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
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
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
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
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
반적 기능수준(Global Asses

-----간
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
람

나. -----

---증상 등의 -----

-----, ---

-----간헐적으로 도
움이 필요한 사람

다. -----

-----간
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
람

<u>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u>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라. (현행과 같음)
--	--------------------